

## 【 6 】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12. 1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 개정이유

- 주차장법개정(1999.2.8 법률 제5902호)시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30분으로 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개정(안 제3조)
- 나. 주차장 관리자의 주차거부 금지조항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삭제(안 제4조)
- 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종전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 라.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과 주차구획선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삭제(안 제9조, 제10조)
- 마.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및 주차장 설치 심의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의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안 제11조, 제12조)

##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주차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양주군주차장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과 같이 한다.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장애인의 자가운전자 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과 경자동차(800cc미만)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며,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자에 한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4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중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등)

②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 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6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제7조(부설주차장)** ①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 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호 내지 제21호(제19호 다목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중 잔여토지가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6조 별표1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하천·철도(고가철도 제외)등으로 인하여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 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영 별표1 비고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 ②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 면에는 지체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10조(과징금 처분)** ①법 제2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

##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 1급지

(단위 : 원)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구획당 최초30분	1구획당(최초30분후) 10분	1일주차권 (선납)	1구획당 최초 30분	1구획당(최초30분후) 10분	1일주차권 (선납)
대형	800	300	8,000	500	200	5,000
소형	500	200	5,000	300	100	3,000

○ 2급지

(단위 : 원)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구획당 최초30분	1구획당(최초30분후) 10분	1일주차권 (선납)	1구획당 최초30분	1구획당(최초30분후) 10분	1일주차권 (선납)
대형	500	200	5,000	300	200	3,000
소형	300	100	3,000	200	100	2,000

※ 대형은 2.5톤 이상 화물차와 16인승 이상 승합 및 버스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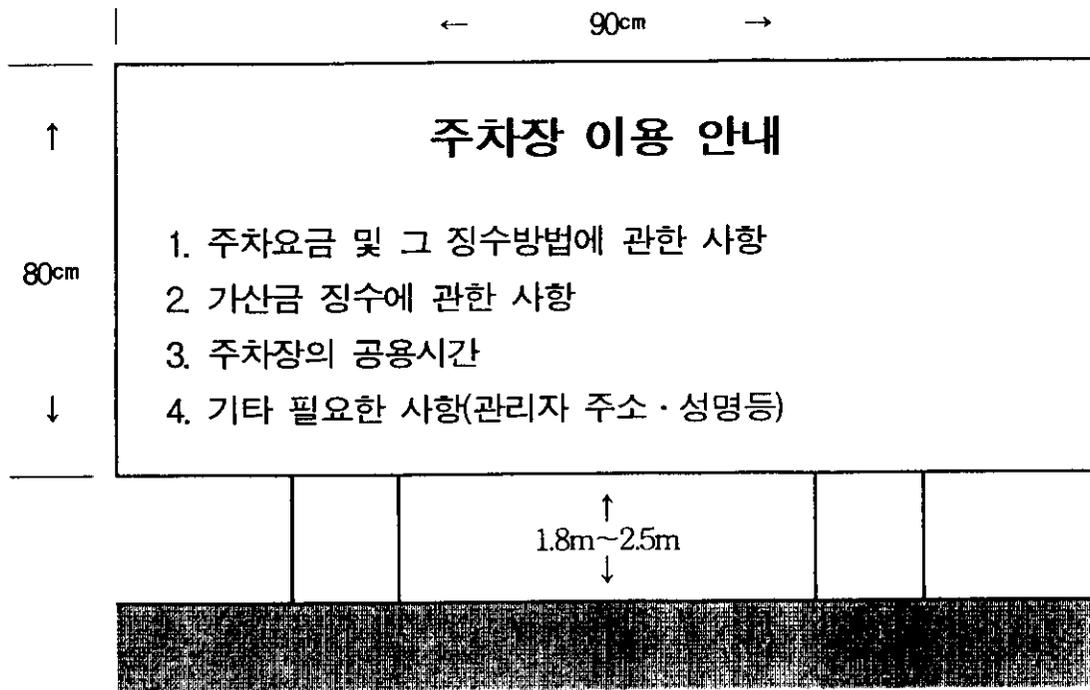
※ 최초 30분 미만은 30분으로 한다.

( 비 고 )

-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00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당해 지역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한다.
  - 1급지 :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1급지가 2급지의 1.5~2배 수준이 되도록하고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중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내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 40,000원 이내의 주차요금을 월 정액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야간 주차차량에 대한 요금은 무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제4조 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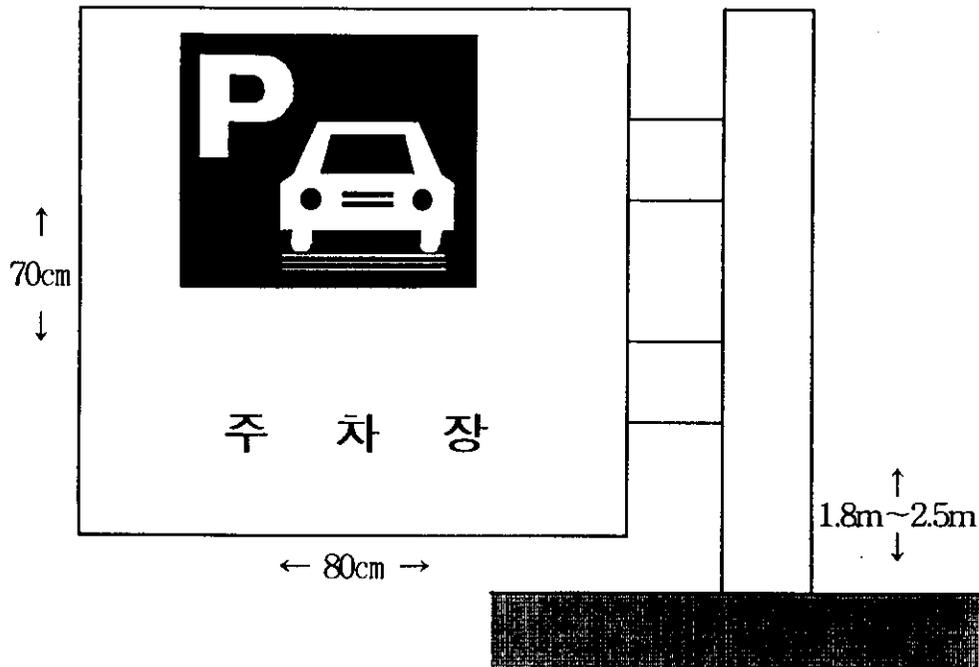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비고	
			바탕	글씨(고딕)		
노	상	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색	
노	외	주차장	"	"	"	

(별지 제2호 서식)

노외주차장 표지(제4조 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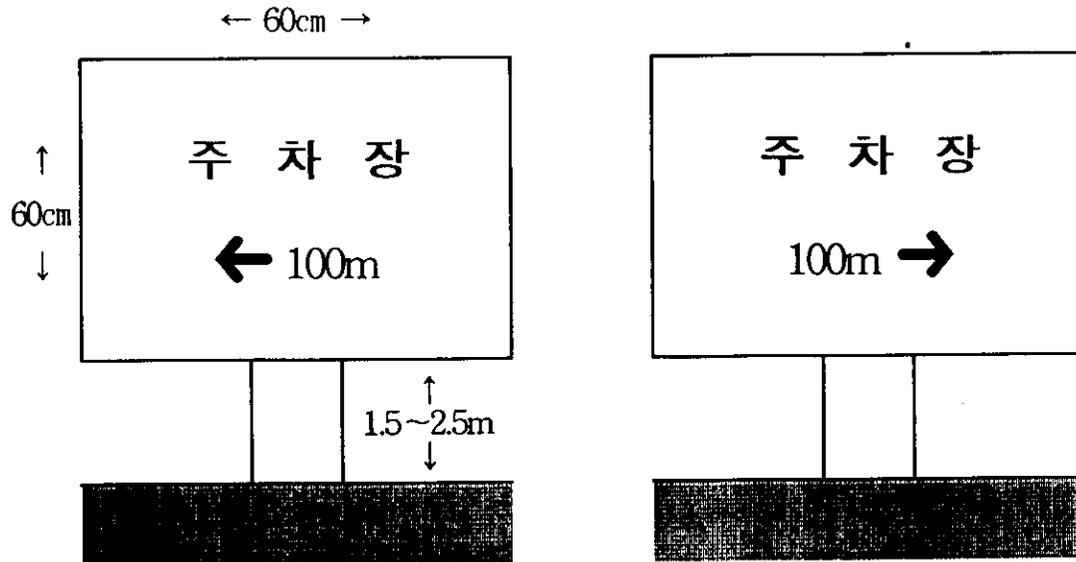


《 비 고 》

1.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2. 색 책
  - 가.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나.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3. 규 격
  - 가. 내부표지판 : 가로 30cm × 세로 25cm
  - 나. 문 자 : 가로 17cm × 세로 17cm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페인트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제4조 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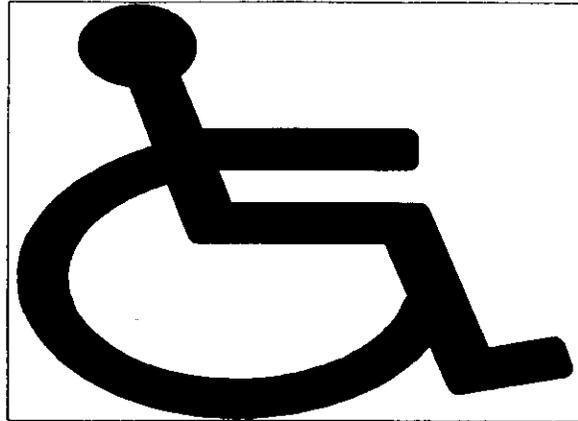


〈 비 고 〉

1.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2. 색 채  
가. 바 탕 : 청색  
나. 문자 및 기호 : 흰색
3. 설치위치 : 노외 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 전용 표지(제9조 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 지 판 : 가로 40cm × 세로 40cm

나. 휠체어 그림 부분 : 가로 28cm × 세로 32cm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cm~20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 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생략)	제1조(목적)(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내의-----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u>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u>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 -----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별표1과 같이 한다.</u>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에는 ----- ----- ----- 같은 금액의 ----- 부과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경우에는 10분단위로----- ----- ----- 부과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 삭제 >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2.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제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p> <p><u>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생략)</u></p> <p>1~2(생략) &lt;신 설&gt;</p> <p>3.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설명, 주차제한 차량등)</p> <p>②~③(생략) ④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p><u>제6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생략)</u></p> <p><u>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을 관할하는 군·도지사의 실시 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 하여야 한다.</u></p> <p>②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한후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u>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u></p>	<p><u>제4조(공영주차장의 표지)①(현행 제5조제1항과 같음)</u></p> <p>1~2(현행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관리자 주소, 설명등)</p> <p>②~③(현행 제5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3호서식에 -----</p> <p><u>제5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행 제6조와 같음)</u></p> <p>&lt;삭 제&gt;</p> <p><u>제6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현행 제8조와 같음)</u></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u>제9조(사용제한)노상주차장의 사용시간은 단축하거나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사용제한 만료시 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u>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u></p>	<p>&lt; 삭제 &gt;</p>
<p><u>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주차방법 및 별지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수 있다.</u></p> <p><u>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 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③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u></p>	<p>&lt; 삭제 &gt;</p>
<p><u>제11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이하 “신고 노외주차장” 이라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u></p> <p>1. 대상 토지는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을것(단, 녹지지역 내에서는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에 한함)</p> <p>2. 제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 기준에 적합할 것.</p> <p><u>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는 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lt; 삭제 &gt;</p>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12조(주차장 설치심의등)법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li> <li>2.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li> <li>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li> </ol>	<p>&lt; 삭제 &gt;</p>
<p>제13조(부설주차장설치 및 기준)①법 제19 제1항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 제1호 내지 제32호(제22호 가목 및 제24호, 제27호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p> <p>②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다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중 잔여토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p> <p>③영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p>	<p>제7조(부설주차장)①----- ----- ----- ----- 제34조의4 별표 1 제1호 내지 제21호(제19호 다목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②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 -----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영 제6조 별표1에 서 규정한----- -----</p>
<p>설치하여야 하는 자(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허가, 인가신청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 삭제 &gt;</p>
<p>제14조 삭제</p>	<p>&lt; 삭제 &gt;</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u>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②(생략)</u></p> <p>③영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영 제11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p> <p>④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u>제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②(현행 제15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음)</u></p> <p>&lt; 삭제 &gt;</p> <p>③(현행 제15조제4항과 같음)</p>
<p>제16조 삭제('97.9.29)</p>	<p>&lt; 삭제 &gt;</p>
<p>제17조 삭제('97.9.29)</p>	<p>&lt; 삭제 &gt;</p>
<p><u>제18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①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여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u>②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p> <p><u>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옥상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lt; 삭제 &gt;</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③(생략) 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의한다.</p>	<p>제9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③(현행 제18조의2 ①~③과 같음) ④-----제4호----- -----</p>
<p>제18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이용)① 법 제19조 조의 3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와 주차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물의 종류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을 준용하되, 그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준용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li> <li>2. 주차장의 규모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주차장</li> </ol> <p>②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 서식의 부설 주차장이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 배치도(일반이용부분 표시)</li> <li>2. 인근 200미터 이내에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li> <li>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조서 (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면적·건축연면적·건축물의 용도·층수 및 높이와 주차 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li> <li>4.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li> <li>5.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른 관리규정(규칙 제8조에 의한 관리규정으로 이 경우 노외를 부설로 한다)</li> </ol> <p>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설 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u>제19조(과징금 처분)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u> 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② &lt;삽입&gt;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행위의 증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따라 징수한다.</p>	<p><u>제10조(과징금 처분)① &lt;삭 제&gt;</u></p> <p>① 법 제2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 ----- ----- -----</p> <p>②~③(현행 제19조 ③~④과 같음)</p> <p>&lt;삭 제&gt;</p>
<p><u>제20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lt;삭 제&gt;</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1급지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 colspan="2">노상주차장</th> <th colspan="2">노외주차장</th> </tr> <tr> <th>구분</th> <th>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th> <th>2시간초과시 (1구획당30 분 기준)</th> <th>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th> <th>2시간초과 시(1구획당 30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대형</td> <td>800</td> <td>1,600</td> <td>500</td> <td>1,000</td> </tr> <tr> <td>소형</td> <td>500</td> <td>1,000</td> <td>300</td> <td>600</td> </tr> </tbody> </table> <p>○2급지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 colspan="2">노상주차장</th> <th colspan="2">노외주차장</th> </tr> <tr> <th>구분</th> <th>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th> <th>2시간초과시 (1구획당30 분 기준)</th> <th>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th> <th>2시간초과 시(1구획당 30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대형</td> <td>500</td> <td>1,000</td> <td>300</td> <td>600</td> </tr> <tr> <td>소형</td> <td>300</td> <td>600</td> <td>200</td> <td>400</td> </tr> </tbody> </table> <p>※대형은 25톤이상 화물차와 16인승 승합 및 버스를 말한다. (신 설)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당해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가. 1급지: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500m 이내 나. 2급지: 1급지 이외의 지역 4. 주차요금은 당해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중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가. 급지별 요금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1급지가 2급지의 1.5배~2배의 수준이 되도록 한다. 나. 주차수요예제 및 주차장 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시간초과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 징수한다. 5.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한함)내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월정액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 40,000원 이내 6. 야간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은 무료로 한다.</p>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구분	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초과 시(1구획당 30분 기준)	대형	800	1,600	500	1,000	소형	500	1,000	300	600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구분	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초과 시(1구획당 30분 기준)	대형	500	1,000	300	600	소형	300	600	200	400	<p>(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 colspan="3">-----</th> <th colspan="3">-----</th> </tr> <tr> <th></th> <th>1구획당 최초30분</th> <th>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th> <th>1일주차 권(선납)</th> <th>1구획당 최초30분</th> <th>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th> <th>1일주차 권(선납)</th> </tr> </thead> <tbody> <tr> <td>--</td> <td>800</td> <td>300</td> <td>8,000</td> <td>500</td> <td>200</td> <td>5,000</td> </tr> <tr> <td>--</td> <td>500</td> <td>200</td> <td>5,000</td> <td>300</td> <td>100</td> <td>3,000</td> </tr> </tbody> </table> <p>○-----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 colspan="3">-----</th> <th colspan="3">-----</th> </tr> <tr> <th></th> <th>1구획당 최초30분</th> <th>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th> <th>1일주차 권(선납)</th> <th>1구획당 최초30분</th> <th>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th> <th>1일주차 권(선납)</th> </tr> </thead> <tbody> <tr> <td>--</td> <td>500</td> <td>200</td> <td>5,000</td> <td>300</td> <td>200</td> <td>3,000</td> </tr> <tr> <td>--</td> <td>300</td> <td>100</td> <td>3,000</td> <td>200</td> <td>100</td> <td>2,000</td> </tr> </tbody> </table> <p>※----- ※ 최초 30분 미만은 30분으로 한다. (비 고) 1~3(현행과 같음) 4.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1급지가 2급지의 1.5~2배 수준이 되도록하고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중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가. &lt;삭제&gt; 나. &lt;삭제&gt; 5.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내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40,000원 이내의 주차요금을 월정액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6.(현행과 같음)</p>			-----			-----				1구획당 최초30분	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	1일주차 권(선납)	1구획당 최초30분	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	1일주차 권(선납)	--	800	300	8,000	500	200	5,000	--	500	200	5,000	300	100	3,000		-----			-----				1구획당 최초30분	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	1일주차 권(선납)	1구획당 최초30분	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	1일주차 권(선납)	--	500	200	5,000	300	200	3,000	--	300	100	3,000	200	100	2,000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구분	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초과 시(1구획당 30분 기준)																																																																																															
대형	800	1,600	500	1,000																																																																																															
소형	500	1,000	300	600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구분	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까지 (1구획당30 분 기준)	2시간초과 시(1구획당 30분 기준)																																																																																															
대형	500	1,000	300	600																																																																																															
소형	300	600	200	400																																																																																															
	-----			-----																																																																																															
	1구획당 최초30분	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	1일주차 권(선납)	1구획당 최초30분	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	1일주차 권(선납)																																																																																													
--	800	300	8,000	500	200	5,000																																																																																													
--	500	200	5,000	300	100	3,000																																																																																													
	-----			-----																																																																																															
	1구획당 최초30분	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	1일주차 권(선납)	1구획당 최초30분	1구획당 (최초30 분후) 10분	1일주차 권(선납)																																																																																													
--	500	200	5,000	300	200	3,000																																																																																													
--	300	100	3,000	200	100	2,0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시 설 물</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설 치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숙박 시설</td> <td>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td> <td>1.5객식당1대+부대운동시설별산정대수+기타부대설비시설면적30㎡당1대</td> </tr> <tr> <td>기 타</td> <td>시설면적 100㎡당 1대</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의료 시설</td> <td>종합병원</td> <td>2병상당 1대로 산정된대수와시설면적90㎡당1대로산정된 대수중 많은대수</td> </tr> <tr> <td>기 타</td> <td>시설면적 100㎡당 1대</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운동 시설</td> <td>골프장</td> <td>0.8홀당 10대</td> </tr> <tr> <td>골프연습장</td> <td>0.8타석당 1대</td> </tr> <tr> <td>육외수영장</td> <td>정원 10인당 1대</td> </tr> <tr> <td>기 타</td> <td>시설면적 100㎡당 1대</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관람 집회 시설</td> <td>운동경기관람장</td> <td>수용인원 100인당 1대</td> </tr> <tr> <td>예식장</td> <td>시설면적 40㎡당 1대</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판매 시설</td> <td>기 타</td> <td>시설면적 80㎡당 1대</td> </tr> <tr> <td>백화점, 쇼핑센터</td> <td>시설면적 60㎡당 1대</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위락시설(숙박시에 부 대하여 설치되는 위락 시설시설을제외한다)</td> <td>유 용 음식점</td> <td>시설면적 40㎡당 1대</td> </tr> <tr> <td>기 타</td> <td>시설면적 80㎡당 1대</td> </tr> <tr> <td>업무시설, 종교시설</td> <td>시설면적100㎡당 1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기시설,운수시설,방송,통신시 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td> <td></td> <td>시설면적150㎡당 1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근원생활시설</td> <td></td> <td>시설면적150㎡당 1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단독주택</td> <td></td> <td>건축면적 130㎡초과 300㎡이하는 1대,건축면적 20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공동주택</td> <td></td> <td>건축면적 120㎡당 1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기타건축물</td> <td></td> <td>시설면적 200㎡당 1대</td> </tr> </tbody> </table>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 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1.5객식당1대+부대운동시설별산정대수+기타부대설비시설면적30㎡당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의료 시설	종합병원	2병상당 1대로 산정된대수와시설면적90㎡당1대로산정된 대수중 많은대수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운동 시설	골프장	0.8홀당 10대	골프연습장	0.8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관람 집회 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식장	시설면적 40㎡당 1대	판매 시설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60㎡당 1대	위락시설(숙박시에 부 대하여 설치되는 위락 시설시설을제외한다)	유 용 음식점	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100㎡당 1대	전기시설,운수시설,방송,통신시 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150㎡당 1대	근원생활시설		시설면적150㎡당 1대	단독주택		건축면적 130㎡초과 300㎡이하는 1대,건축면적 20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건축면적 120㎡당 1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p>&lt;삭제&gt;</p>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 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1.5객식당1대+부대운동시설별산정대수+기타부대설비시설면적30㎡당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의료 시설	종합병원	2병상당 1대로 산정된대수와시설면적90㎡당1대로산정된 대수중 많은대수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운동 시설	골프장	0.8홀당 10대																																																					
	골프연습장	0.8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관람 집회 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식장	시설면적 40㎡당 1대																																																					
판매 시설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60㎡당 1대																																																					
위락시설(숙박시에 부 대하여 설치되는 위락 시설시설을제외한다)	유 용 음식점	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100㎡당 1대																																																					
전기시설,운수시설,방송,통신시 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150㎡당 1대																																																					
근원생활시설		시설면적150㎡당 1대																																																					
단독주택		건축면적 130㎡초과 300㎡이하는 1대,건축면적 20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건축면적 120㎡당 1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3) 건축물의용도시설물의종류(제18조의3제1항관련)		<삭제>
시설물의 종류	내 용	
○ 근린생활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1) 병원	
○ 교육연구시설	1) 학교    2) 교육원    3) 학원 4) 연구소    5) 도서관	
○ 운동시설	1) 체육관    2) 운동장	
○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2) 일반업무시설	
○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2) 관광숙박시설	
○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 위락시설	1) 주점영업, 2) 특수목욕장3) 유키장	
○ 관람집회시설	1) 공연장    2) 집회장    3) 관람장	
○ 전시장	1) 미술관    2) 기념관 3)이와 유사한것	
○ 운수시설	1)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2) 철도역사	
○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2) 정비공장, 운전학원 3)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어린이회관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4) 과징금 가감 기준( 제19조 관련) (단위 :만원)				<삭제>			
위 반 행 위	위반정도	기 본 과징금	가감후 과징금				
1. 관리규정을 제출 하지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의 공용을 개시 한 때	위반시	250	250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		3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 요금을 받은 때	위반시	100	100				
	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 의 50% 이상		110				
	3회이상 또는 주차요금 100% 이상		12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 한 때	위반시	50	50				
	1회 이상 시정 명령 위반시		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위반시	50	50				
	2회 이상 시정 명령 위반시		60				
5.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위반시	50	50				
	2회이상 위반시		6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 한 때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	50				
	개선명령 2회 위반시		6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 사를 거부.기피또는 방해한 때	위반시	50	50				
	2회 이상 위반시		60				
8. 신고로 발생한 권 리의무를 임의로 양도 하거나 양수한 때 (노상주차장에 한함)	위반시	50	50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		60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제 20조 관련) (단위:만원)			<삭제>
위반 행위	구 분	과태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자( 법 제12조 제2항 규정 관련)	바닥면적 500㎡ 미만	90	
	바닥면적 500㎡ 이상	100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의 이용중지 또는 폐제한자 ( 법 제16조 관련)	신고주차장	50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駐車場法

第9條 (路上駐車場の 駐車料金徴收等) ①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을 管理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を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を 받을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が 駐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3·12·31, 90·4·7, 91·12·14,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の 料率 및 徴收方法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の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駐車料金を 그 利用時間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91·12·14>

③路上駐車場管理者는 正當한 이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を 납부하지 아니한 者 및 第8條의2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駐車料金の 4倍이내의 金額에 해당하는 加算金を 받을 수 있다. <改正 91·12·14>

④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이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徴收할 수 있다. <改正 83·12·31, 91·12·14, 95·12·29>

⑤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駐車料金등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한 駐車料金등의 徴收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 게 委託할 수 있으며,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委託받은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準하여 徴收할 수 있다. <新設 83·12·31, 91·12·14, 95·12·29>

第10條 (路上駐車場の 사용제한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交通의 원활한 疏通과 路上駐車場の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制限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の 경우에는 制限措置에 관계없이 駐車할 수 있다.

1. 路上駐車場の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2. 自動車別 駐車時間의 제한
3. 路上駐車場の 일부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を 위한 專用駐車 區劃의 設置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公告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12·29]

第10條의2 (路上駐車場管理者의 責任) ①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후 70)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駐車場法

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성실히 管理·運營하여야 한다.

②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毀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다만, 路上駐車場管理者가 常駐하지 아니하는 路上駐車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本條新設 83·12·31]

第11條 (路上駐車場의 標識) ①路上駐車場管理者는 路上駐車場에 駐車場標識와 區劃線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 이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料金 기타 路上駐車場의 이용에 관한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4章 路外駐車場

第12條 (路外駐車場의 設置등) ①路外駐車場을 設置 또는 廢止한 者는 建設交通部 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내지 ⑤削除 <99·2·8>

⑥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路外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新設 95·12·29>

[全文改正 90·4·7]

第12條의2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削除 <99·2·8>

②路外駐車場인 駐車專用建築物의 建蔽率, 容積率, 佔地面積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하여는 建築法 第47條 내지 第49條 및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5·12·29>

[本條新設 91·12·14]

第12條의3 (團地造成事業등에 따른 路外駐車場) ①宅地開發事業·工業團地開發事業·都市再開發事業·都市鐵道建設事業 기타 團地造成등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 (이하 "團地造成事業등"이라 한다)을 施行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路外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추 106)

# <법률선혁집 발취>

第6條 (駐車場設備基準등) ①駐車場の構造・設備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②市長・郡守는 다음各號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都市計劃 및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하며, 미리 管轄警察署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駐車場整備地區의 指定申請
2. 駐車場整備計劃의 立案
3.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の 設置

第7條 (路上駐車場の設置 및 廢止) ①路上駐車場은 市長・郡守가 이를 設置한다. 이 경우 都市計劃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市長・郡守가 路上駐車장을 設置함에 있어서 駐車場整備計劃이 決定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整備計劃의 基本方向에 따라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駐車로 인하여 大衆交通手段의 運行障礙 기타 交通疏通에 障礙를 주는 경우 또는 路上駐車장에 대체되는 路外駐車場の 設置등으로 路上駐車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路上駐車장을 廢止하여야 한다.

第9條第1項 但書중 “道路交通法 第2條第13號”를 “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로 한다.

第1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條 (路外駐車場の設置) ①都市計劃區域안에서의 路外駐車장은 市長・郡守가 이를 設置한다. 이 경우 駐車場整備計劃이 決定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駐車場整備計劃에 의한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長・郡守외의 者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路外駐車장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路外駐車장의 構造를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는 때에는 당해 路外駐車場設置에 대한 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제출된 計劃書가 駐車場整備計劃에 의한 駐車場設置에 관한 基本方向(駐車場整備計劃이 決定되어 있는 경우에만한다) 및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の 構造・設備基準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計劃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設置를 완료한 者는 7日이내에 그 사실을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申告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당해 駐車장이 그設置計劃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장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畢證을 받기 전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駐車場法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團地造成事業등의 종류와 규모, 路外駐車場の 규모와 관리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1·12·14]

第13條 (路外駐車場の 管理) ①路外駐車장은 당해 路外駐車장을 設置한 者が 관리한다. <改正 99·2·8>

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장을 設置한 경우 그 관리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委託를 받아 路外駐車장을 管理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新設 83·12·31, 91·12·14, 95·12·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8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는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로 본다. <新設 83·12·31>

第14條 (路外駐車場の 駐車料金徵收등) ①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장을 管理하는 者(이하 “路外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장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を 받을 수 있다.

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の 駐車料金の 料率과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83·12·31, 95·12·29, 99·2·8>

第15條 (관리방법)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の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全文改正 99·2·8]

第16條 削除 <99·2·8>

第17條 (路外駐車場管理者의 責任등) ①路外駐車場管理者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장을 誠實히 管理·運營하여야 하며, 施設의 適正한 維持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の 供用期間에 正當한 事由없이 그 이용을 拒絶할 수 없다.

③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장에 駐車하는 自動車의 保管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

(추 106)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駐車場法

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毀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18條 (路外駐車場의 標識) ①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의 管理者는 駐車場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種類·書式 기타 標識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5章 附設駐車場

第19條 (附設駐車場의 設置) ①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準都市地域 및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準農林地域안에서 建築物·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當해 施設物의 내부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附設駐車場은 當해 施設物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종류와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附設駐車場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인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設物의 敷地隣近에 單獨 또는 共同으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物의 敷地隣近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第1項의 경우에 施設物의 位置·用途·規模 및 附設駐車場의 規模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에는 當해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납부함으로써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費用은 그에 갈음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의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改正 95·12·29>

⑥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費用을 납부한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設置費用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는 權利를 賦與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 106)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駐車場法

第24條 (營業停止等)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の 管理者 또는 第19條의3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の 管理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駐車場の 一般利用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9·2·8>

- 1. 駐車場の 構造·設備基準등이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게 된 때
- 2. 削除 <99·2·8>
-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②削除 <95·12·29>

(全文改正 90·4·7)

第24條의2 (課徵金處分) ①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程度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徵收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改正 91·12·14>

(本條新設 83·12·31)

第24條의3 削除 <99·2·8>

第25條 (보고 및 檢査) ①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路外駐車場管理者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駐車場 또는 그 業務와 관계있는 場所에서 駐車場の 施設 또는 業務에 관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5·12·29>

第26條 削除 <90·4·7>

第27條 削除 <95·12·29>

第28條 (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章 罰 則

第29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

(추 106)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

- 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95·2·18>

(전문개정 92·6·30)

제 5 조 삭제 <99·3·17>

제 5 조의2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의 제출) 법 제1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제19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등(이하 "시설물설치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용도변경전에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부설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3.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본조신설 96·6·4)

제 6 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96·6·4>

③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수 111)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주차장법시행령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9·6·30>

-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과 위락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당해 건축물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95·2·18, 96·6·4>

-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6·6·4>

-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③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변경전에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4>

- 1.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

(수 111)

5. 조치기간

6.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내용

제16조의2 삭제 <97·12·31>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92·6·30, 99·3·17>

제18조 삭제 <96·6·4>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2·6·30>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2·6·30, 96·6·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신청된 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추 109)

● 주차장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0·12·24	건설부령제	474호		
개정	1991·4·26	건설부령제	482호	·	교통부령제 950호
	1991·9·5	건설부령제	492호	·	교통부령제 958호
	1992·9·5	건설부령제	513호	·	교통부령제 984호
	1994·5·26	건설부령제	554호	·	교통부령제 1026호
	1995·8·5	건설교통부령제	27호		
	1996·6·29	건설교통부령제	69호		
	1999·3·12	건설교통부령제	177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차장의 형태) 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 2 조제 1 호의 3 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96·6·29>

1. 자주식주차장 :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 지하식·건축물식

제 3 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5>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92·9·5>

제 4 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 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5, 96·6·29, 99·3·12>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추 109)

다.

-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개정 99·3·17>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징금금액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6조제1항	5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 제17조제2항	50만원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3항	50만원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제1항	50만원

비 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양주군주차장조례

[1984. 2. 1]  
[조례 제933호]

- 전문개정 1985.10.30 조례 제1077호
- 개정 1987. 9. 4 조례 제1167호
- 개정 1989. 6.10 조례 제1273호
- 개정 1993.12.24 조례 제1480호
- 개정 1995. 7.26 조례 제1539호
- 개정 1997. 9.29 조례 제1644호
- 개정 1999. 1. 4 조례 제1692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장애인의 자가운전자 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과 경자동차(800CC미만)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며,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에 한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99. 1. 4)

④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추 3)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주차장조례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 4 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 5 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중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등)
- ②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 6 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추 3)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대 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

제 7 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군,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군, 도지사의 실시 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2 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 8 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제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 9 조(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게시일 7일전부터 사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 3)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주차장조례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 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 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 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이하 "신고 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상 토지는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을 것(단, 녹지 지역 내에서는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에 한함)

2. 제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 기준에 적합할 것

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는 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 설치심의등)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 3 장 부설주차장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①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 제1호 내지 제32호(제22호 가목 및 제24호, 제27호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중 잔여토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99. 1. 4)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주차장조례

③영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허가, 인가신청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하천·철도(고가철도 제외)등으로 인하여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영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영 제11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④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삭제 ('97. 9. 29)

제17조 삭제 ('97. 9. 29)

제18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옥상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

(추 3)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주차장조례

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영 별표1 비고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18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이용) ①법 제19조의 3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와 주차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종류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을 준용하되, 그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준용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2. 주차장의 규모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주차장

②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설 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 배치도(일반이용부분 표시)
2. 인근 200미터 이내에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면적·건축연면적·건축물의 용도·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추 3)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주차장조례

5.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른 관리규정(규칙 제8조에 의한 관리규정으로 이 경우 노외를 부설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9조(과징금 처분) ①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1984. 2. 1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30 조례 제1077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 제3호에 의한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추 3)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주차장조례

에 의한다.

부 칙 (1987. 9. 4 조례 제11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 6.10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24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7.26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29 조례 제16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 4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양주군주차장조례 제3조 제1항 관련)

○ 1급지

(단위 : 원)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구분	2시간까지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까지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분기준)
대형	800	1,600	500	1,000
소형	500	1,000	300	600

○ 2급지

(단위 : 원)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구분	2시간까지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까지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분기준)
대형	500	1,000	300	600
소형	300	600	200	400

\* 대형은 2.5톤이상 화물차와 16인승 이상 승합 및 버스를 말한다.

= 비 고 =

-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관리법 제7조 1항 및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 가. 4월 ~ 10월 08:00~20:00
  - 나. 11월 ~ 3월 09:00~19:00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당해 군의 특성 및 주차장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가. 1급지 :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500m 이내
  - 나. 2급지 : 1급지외의 지역
- 주차요금은 당해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가. 급지별 요금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1급지가 2급지의 1.5배~2배의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주차장조례

- 나. 주차수요억제 및 주차장 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시간초과 주차 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 징수한다.
- 5.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한함)내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월정액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 : 40,000원 이내
- 6. 야간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은 무료로 한다.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1.5객실당 1대 + 부대운동시설별 산정 대수 + 기타 부대시설면적 3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의료시설	종합병원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 적 9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운동시설	골프장	0.8홀당 10대
	골프연습장	0.8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 1대
관람 집회 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식장	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판매 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6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 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 한다)	유흥 음식점	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130㎡ 초과 300㎡ 이하 는 1대, 건축연면적 200㎡ 초과인 경 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 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 등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 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한다.)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20㎡당 1대(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주차장조례

(별표 3)

## 건축물의 용도 시설물의 종류(제18조의 3 제1항 관련)

시 설 물 종 류	내 용
○ 근린생활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1) 병원
○ 교육연구시설	1) 학교      2) 교육원      3) 학원 4) 연구소    5) 도서관
○ 운동시설	1) 체육관    2) 운동장
○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2) 일반업무시설
○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2) 관광숙박시설
○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 위락시설	1) 주점영업   2) 특수목욕장   3) 유키장
○ 관람집회시설	1) 공연장    2) 집회장    3) 관람장
○ 전시장	1) 미술관    2) 기념관    3) 이와 유사한 것
○ 운수시설	1)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2) 철도역사
○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2) 정비공장, 운전학원 3)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어린이회관

(추 2)

(별표 4)

## 과징금가감기준 (제10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위 반 정 도	기 · 본 과징금	가감후 과징금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	위반시	250	250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		3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 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위반시	100	100
	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 요금의 50%이상		110
	3회이상 또는 주차요금 의 100%이상		12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 준에 위반한 때	위반시	50	50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위반시	50	50
	2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60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 한 때	위반시	50	50
	2회이상 위반시		6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 령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1회위반시	50	50
	개선명령 2회위반시		6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 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 는 방해한 때	위반시	50	50
	2회이상 위반시		60
8. 신고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임 의로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노 외주차장에 한함.)	위반시	50	50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		60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주차장조례

(별표 5)

과태료 부과 기준 (제20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구 분	과 태 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 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법 제12조 제2항 규정 관련)	바닥면적 500㎡ 미만	90
	바닥면적 500㎡ 이상	100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 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한 자(법 제16 조 관련)	신고주차장	50

= 비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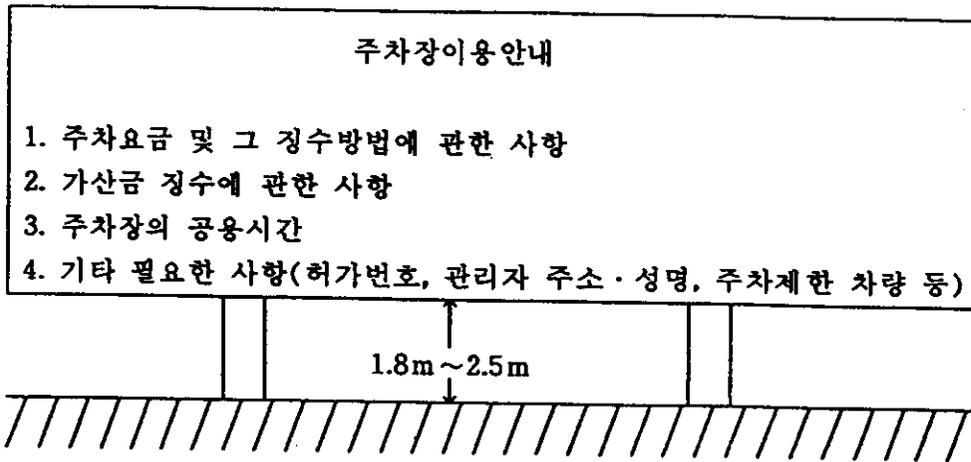
군수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 부과할 수 있다.

(추 2)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5조제1항 관련)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체	
		바 탕	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루미늄판	녹 색	흰 색
공 영 노 의 주 차 장	'	'	'
민 영 노 의 주 차 장	'	청 색	'

\* 색체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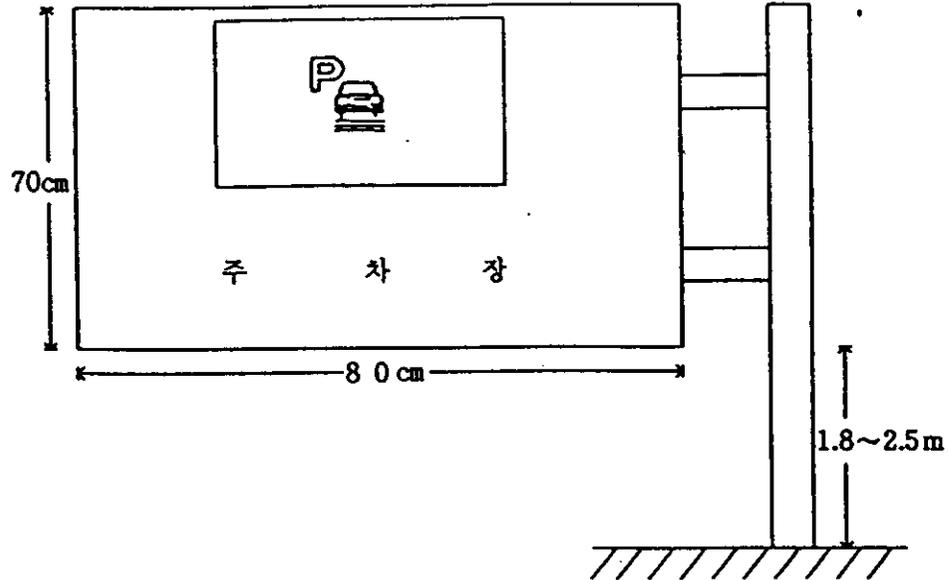
(추 2)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주차장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노 외 주차장 표지

(제5조 제2항 관련)



= 비 고 =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세로 25cm)  
          문자(가로 17cm×세로 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추 2)



〈뒷면〉

※ 기재상 주의사항

-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기재한다.
-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신고인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종교부	

신고 계 호

양주군주차장조례 제18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추 2)

(별지 제4호)

### 주차방법및배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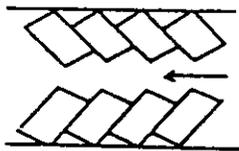
(제10조 관련)

#### 1. 주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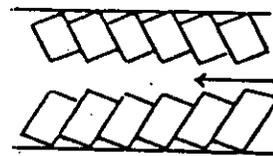


#### 2. 배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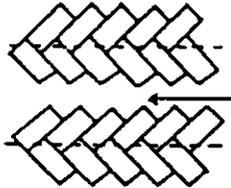
가. 3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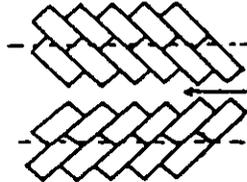
나. 45°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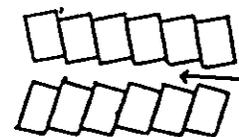
다. 45° 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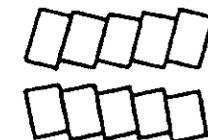
라. 45° 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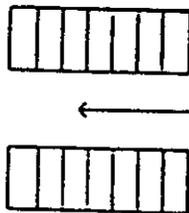
마. 6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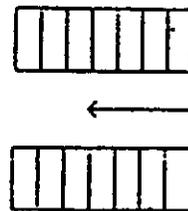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주차장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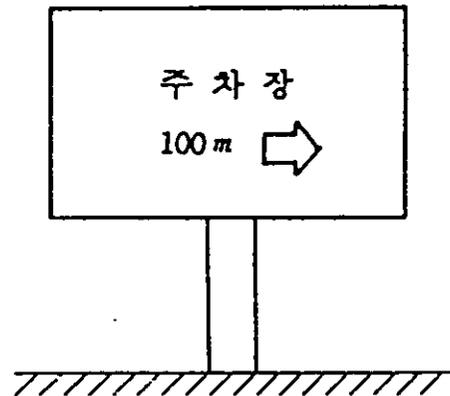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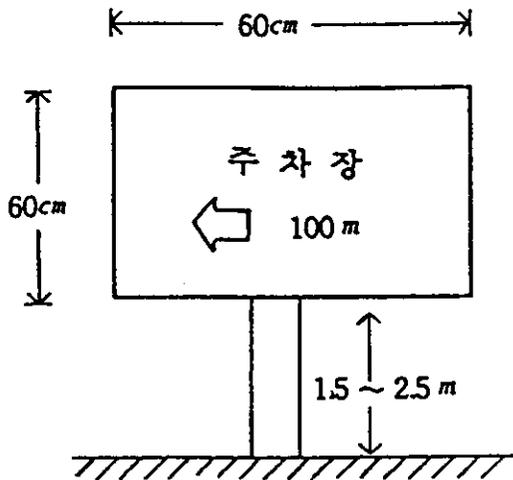
(별지 제5호 서식)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

(제5조 제4항 관련)

(예1)

(예2)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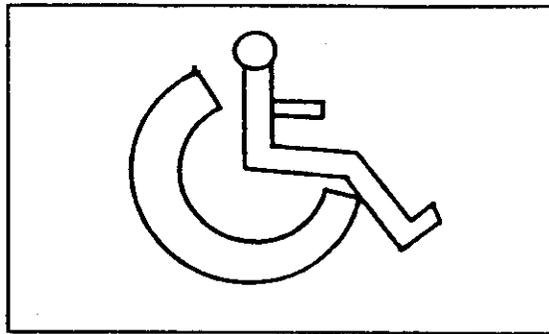
○ 색 채 : 바탕(청색)

          :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 전용표지(제18조의2 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세로 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

### □ 개정구분 : 전부개정

### □ 개정이유

주차장법개정(1999.2.8 법률 제3902호)시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주차요금징수단위를 30분으로 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개정(안 제3조)
- 나. 주차장관리자의 주차거부금지조항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삭제(안 제4조)
- 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종전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상위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안 제7조)
- 라.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과 주차구획선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삭제(안 제9조, 제10조)
- 마.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및 주차장 설치 심의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의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안 제11조, 제12조)
- 바.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제공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삭제(안 제18조의 3)
- 사. 관계법령등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규정은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함(안 제10조)

### □ 개정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주차장법 제10조, 제12조(법률연혁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2
- 주차장법시행령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9조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99.8.2 ~ 8.21(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음

기타참고사항 : 별첨

○ 양주군주차장조례